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59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1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11. 14.

다. 상정·의결일자 : 2024. 11. 26.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재무과장 이현주)

가. 개정이유

-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자 요건 및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현행)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

3) 지원대상자 요건 명확화(안 제3조)

- 고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4) 성실납세자 지원사항 확대 등(안 제5조)

가) 1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 → 5만원 이하의 내고장상품권

나) 재선정 제외기간 명시: 2년간

5) 명부관리 강화(안 제6조)

-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2) 예산조치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7263호(2024. 9. 23.)]

4) 기 타

가)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1494호

- 예고기간: 2024. 9. 25. ~ 2024. 10. 15.(20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불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명 변경

-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전부 개정 취지를 규정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4조)

-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음.

- 지원 등(안 제5조)
 -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 명부관리 및 선정취소(안 제6조)
 -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록한 명부관리와 유공납세자의 탈세, 체납 등 사실이 확인된 때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의규정에서는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두는바, 안 제2조제2호의 “성실납세자 등” 정의와 관련하여 본문에 관련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바 정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적용례의 “2025년 성실납세자 등”은 “2025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고성군수가 발행·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 성실납세자의 지원과 관련하여 “5만원 이하의 내고장상품권 지급”을 “5만원 이하의 고성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11. 26. 수정가결

- 붙임 1.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제안서

의안번호	제2857호 관련
------	--------------

제안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	우정욱 의원

1. 수정이유

- 정의의 실익이 없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함.

2. 수정내용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내고장상품권” 을 “고성사랑상품권” 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2025년 성실납세자 등으로” 를 “2025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수정한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내고장상품권” 을 “고성사랑상품권” 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2025년 성실납세자 등으로” 를 “2025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 “<u>성실납세자 등</u>”이란 <u>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u>를 말한다.</p> <p><u>3.</u>(생략)</p> <p>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1. <u>성실납세자</u>: 5만원 이하의 <u>내 고장상품권</u> 지급</p> <p>2.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가.~라.(생략)</p> <p>②·③(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u>2025년 성실납세자 등으로</u>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정의) ----- -----.</p> <p>1.(현행과 같음) <u>삭 제</u></p> <p><u>2.</u>(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5조(지원 등) ① ----- ----- -----.</p> <p>1. <u>성실납세자</u>: 5만원 이하의 <u>고성사랑상품권</u> 지급</p> <p>2. (현행과 같음) 가.~라.(현행과 같음)</p> <p>②·③(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u>2025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u>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p>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59호
----------	--------

제출연월일: 2024. 11. 14.
제출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자 요건 및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성실납세자 등” 용어의 삭제

다. 지원대상자 요건 명확화(안 제3조)

- 고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 중 성실납세자 및 유공 납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라. 성실납세자 지원사항 확대 등(안 제5조)

- 1) 1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 → 5만원 이하의 고성사랑상품권
- 2) 재선정 제외기간 명시: 2년간

마. 명부관리 강화(안 제6조)

-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사항: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7263호(2024. 9. 23.)]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1494호

가) 예고기간: 2024. 9. 25. ~ 2024. 10. 15.(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선정기준일 현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세외수입 체납 포함)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2. 유공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5만원 이하의 고성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지원
 - 가.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 나. 표창장 또는 감사패
 - 다.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조치
 - 라.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② 성실납세자에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6조(명부관리 및 선정취소)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성실납세자 지원: 5만원 이하의 내고장상품권 지급(예산의 범위 내)

※ 2025년 당초예산 요구: 6,000,000원(30,000원 × 200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작성자: 재무과장 이 현 주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4항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509호, 2019. 11.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 중 고지서 1매당 본세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11. 조 2509>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라 함은 「고성군세 조례」(이하 “군세조례”라 한다)에 규정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군세조례에 규정한 정기분 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과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사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에게 1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에게 1만원 상당의 내고장상품권 등 지급
2. 제3조제3호의 대상자에게 매년 등기우편료 상당액 지급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징수유예에 따른 납기한 연장시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 완화

나. 기타 각종행사에 우선초청 대상자로 선정, 위원회 위촉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